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30 호

2006년 12월 28일 목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35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동주택관리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36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8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37호(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2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38호(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2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39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29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82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32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451호(2006-7회차압류차량공매공고) 3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454호(처분사전통지서 시송달 공고) 4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456호(2007년도토지외의과세대상에대한시가표준액열람공고) 4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457호(식품위생법 위반에따른청문실시 시송달) 48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65호(2006년도예산고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65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66호(2007년도예산고시(200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54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67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67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68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남촌동소2-19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62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69호(주택재건축정비사업준공인가고시(안남·동암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66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70호(2007년도토지외의과세대상에대한시가표준액결정고시) 67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12 월 28 일

남동구 조례 제83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2.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3. 1호 내지 2호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제2장 공동주택관리의 지원

제4조(종합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비율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의 지원 비율 및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공동주택관리 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등)의 유지 및 보수. 다만,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주차시설, 표지판, 보도의 유지 및 보수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②구청장은 지원대상중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종합계획에 의거 당해연도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지원대상, 범위,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공동시설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신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1부
2.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산출기초, 소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등 포함) 1부

4. 기타 구청장이 사업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한다.

④지원신청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년1회에 한하되, 제6조 제1항의 각 호중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7조 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공동주택 보조금지원대상 사업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 및 직무)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 순위 및 지원금액 심의
3. 기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지원대상사업에 있어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장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설치)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남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총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2인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2인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구 소속공무원

③위원장은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으로 한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⑤제2항제3호 및 제4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7.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단지 내 분쟁
8.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 및 운영)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등) ①조정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공동주택관리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22조(분쟁의 조정 신청) ①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 당 1인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관계전문가 포함)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25조(조정의 효력) ①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결사항을 통보받은 당사자 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종결 등) ①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 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제25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공동시설 지원 신청서

신청인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입 주 자 대표회의 의 결 일		준 공 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목 적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계	보조금 신청액	자 체 예 산
계							
도로분야 (보안등포함)							
하수분야							
어 린 이 놀이터보수							
기 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사업계획서 등
접 수 처 : 남동구청 건축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공동주택명		관리사무소 연 락 처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1. 대표자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결서					
조정건명					
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	성 명	서 명	직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결통지서				
조정건명				
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25조) 년 월 일 남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 청 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석대상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출석일자	년 월 일 (00 : 00)			
출석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남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피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신청일자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공동주택단지 내의 기반시설 등은 다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부분으로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
-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입주민간 각종 분쟁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로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복리시설, 주차시설, 표지판, 보도의 유지 및 보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용시설물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은 「주택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및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단지 내 분쟁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12 월 28 일

남동구 조례 제83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대시설”이라 함은 전기 및 방송시설을 말한다.

제4조 제1호 “남동구 경,조 행사등”을 “남동구 주최 행사 등”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동장을 연중 상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한다.
다만, 구월근린공원은 사용허가시간에 한한다.

제6조 제목 “사용시간”을 “사용허가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운동장의 일일 사용허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남동공단근린공원

- 조기 05:00 ~ 09:00 (동계 06:00 ~ 09:00)
- 주간 09:00 ~ 18:00 (동계 09:00 ~ 18:00)
- 야간 18:00 ~ 22:00 (동절기는 주간에 한함)

2. 구월근린공원

- 하절기(3 ~ 10월) 07:00 ~ 19:00
- 동절기(11 ~ 2월) 08:00 ~ 18:00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허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운동장 사용의 우선순위)이 조례에 의한 공원운동장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

제7조(사용료)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운동장의 사용 허가시간내에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운동장의 사용료는 운동장, 부대시설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③운동장의 사용료는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6조3항에 의한 사용허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 본문 후단에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구월근린공원에 한한다.”를 신설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를 제5호로 한다.

1. 구민을 위한 행사 및 각종 경기대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관내 초·중·고등학교 축구부 및 구 지원 유소년단체 (월 2회 면제)

4. 주민의 여가활동 (주 1회 면제)

제9조제1호중 “사용 3일전까지”를 “사용 1일전까지”로 하고, “사용료의 50/100”를 “사용료 전액”으로 하며, 같은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한 경우로서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제10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남동구 공원운동장 사용료

■ 남동공단근린공원

(단위:원)

사용구분 (사용허가시간내)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비 고
사용시간	분 류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9시간	09:00~18:00	50,000	70,000	100,000	130,000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4시간이하 사용	① 09:00~13:00 ② 14:00~18:00	20,000	30,000	40,000	60,000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동일행사 또는 동일인의 1 일내 오전,오후 연속사용하는 제 한

■ 구월근린공원

(단위:원)

사 용 구 분 (사용허가시간 내 : 2시간 기준)		평일	공휴일	비 고
일 반		50,000	70,000	
관내 초·중·고 축구부·구지원유소년 축구단체	면 제	월 2회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추가사용 시 일반요금의 50% 감면	25,000	35,000	
관외 초·중·고 축 구 부	일반요금의 50% 감면	25,000	35,000	“

【별표2】

부대시설 사용료

사 용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전기 및 방송시설	30,00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시설의 형평성에 따라 남동공단근린공원과 구월근린공원으로 분리 징수하고, 구월근린공원에 대하여는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존운동장 사용료를 소폭 인상하여 이용자의편익제공과 쾌적한 시설물 제공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용허가 시간의 구분

1.남동공단근린공원

- 조기 05:00 ~ 09:00 (동계 06:00 ~ 09:00)
- 주간 09:00 ~ 18:00 (동계 09:00 ~ 18:00)
- 야간 18:00 ~ 22:00 (동절기는 주간에 한함)

2.구월근린공원

- 하절기(3 ~ 10월) 07:00 ~ 19:00
- 동절기(11 ~ 2월) 08:00 ~ 18:00

○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12 월 28 일

남동구 조례 제83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으로 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업 및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노인인력관리센터”를 “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이하 “노인인력관리센터”라 한다)로 한다.

같은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와 제7호를 삭제한다.

1. 우리구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발굴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과 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제4조의 제목 “운영”을 “위탁운영 등”으로 하며, 같은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①구청장은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노인인력관리센터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④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으로 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

□ 주요내용

○ 노인인력관리센터의 기능

우리구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발굴 및 보급,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과 훈련,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노인인력 관리센터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12 월 28 일

남동구 조례 제83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의 제1호 중 “ 동사무소”를 “동”으로 한다.

제3조(원칙)의 제3호중 “동사무소별”을 “동별”로 한다.

제4조(설치등) 제1항중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를 “동의 관할구역내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동사무소별”을 “동별”로 한다.

제5조(기능) 제2항중 “동사무소의”를 “동의”로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1항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동사무소에”를 “동에”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동사무소별”을 “동별”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동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7조(운영)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동조 제3항의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를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를”로 하며, 동조 제4항의 “동사무소의 동장,”을 “동장과”로 하고, 동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등) 제3항중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를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제4항중 “그 회복을 위해 변상”을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5조(설치)중 “동사무소의”를 “동의”로 한다.

제16조(기능) 제1항 제6호중 “통·반의 명칭, 관할구역”을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7조(구성 등) 제1항중 “고문은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해 선거구내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당연직 고문 이외에 3인 이내의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를 “동의 관할구역 내에”로 하고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제1호의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2호의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한다.

동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제7항(기존 제6항)중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를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을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해촉) 제1항의 “위원이”를 “위원 및 고문이”로 하고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동조 제1항의 제1호의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를 “동의 관할구역 외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위원의”를 “위원 및 고문의”로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중 “참석위원”을 “참석 고문 및 위원”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제)등 사회 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치위원의 역할증대 및 자치센터 운영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조항 신설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12 월 28 일

남동구 조례 제83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 : 754명
3. 총 계 : 773명

제3조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05.5.4 조례제764호)제2항 중 후단의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12월31일”로
개정한다.

부칙(2005.12.30 조례제792호)제2항중 후단의 “2006년 12월 31일”을“2008년 12월 31일”로
개정한다.

부칙(2006.2.6 조례제796호)제2항중 후단의 “2006년 12월 31일”을“2008년12월31일”로
개정한다.

부칙(2006.6.13 조례제806호) 제2항중 후단의 “2006년12월31일”을“2008년12월31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관별 ·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현행						개정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769	494	19	43	17	196	773	498	19	43	17	196
정무직 계	1	1					현행과 같음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74	441	11	40	16	166	678	445	11	40	16	166
3급	1	1					현행과 같음					
4급	5	3	1	1								
5급	42	17	2	5	1	17						
6급	136	90	3	6	3	34	137	91	3	6	3	34
7급	194	142	5	7	4	36	196	144	5	7	4	36
8급	206	136		12	7	51	207	137		12	7	51
9급	90	52		9	1	28	현행과 같음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1	1										
기능직 계	93	51	8	3	1	30						
기능6급	3	3										
기능7급	5	4				1						
기능8급	12	10	2									
기능9급	26	14	5	2		5						
기능10급	47	20	1	1	1	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대단위 도시개발에 따른 행정분야 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정분야의 인력을 충원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주요내용

- 총계정원 769명을 773명으로 조정
- 집행기관 정원은 750명에서 754명으로 조정
징수기동 1팀 (6급 1명, 7급2명, 8급 1명)
-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당초 '06.12.31에서 '08.12.31로 변경)
복식부기 전담인력(2명),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1명), 과거사정리 전담인력(1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1명)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12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6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2조)

기관별 직급별	현행						개정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769	494	19	43	17	196	773	498	19	43	17	196
정무직 계	1	1					현행과 같음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74	441	11	40	16	166	678	445	11	40	16	166
3급 소계	1	1					현행과 같음					
행정	1	1										
4급 소계	5	3	1	1								
행정	2	1	1									
시설	1	1										
행정·임업	1	1										
보건·의무	1			1								
5급 소계	42	17	2	5	1	17						
행정	24	11	2		1	10						
의무	4			4								
토목	1	1										
건축	1	1										
행정·전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토목	1	1										
행정·지적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토목·임업	2	1				1						
행정·화공·기계·환경	1					1						
행정·임업·토목·지적	1					1						
6급 소계	136	90	3	6	3	34	137	91	3	6	3	34
행정	81	45	3		2	31	현행과 같음					
세무	3	3										
사회복지	2	2										

기관별 직급별	현행						개정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전산	1	1					현행과 같음					
임업	2	2										
보건	1	1										
환경	1	1										
토목	3	3										
건축	3	3										
지적	3	3										
<u>행정·세무</u>	4	4					<u>5</u>	<u>5</u>				
행정·사회복지	9	6				3	현행과 같음					
행정·기계	1	1										
행정·화공	1	1										
행정·농업	1	1										
행정·임업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2	2										
행정·토목	1	1										
임업·토목	1	1										
통신·전자통신	1	1										
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1			1								
의료기술·간호	1			1								
토목·건축	3	3										
행정·전기·건축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화공	1	1										
행정·토목·건축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7급 소계	194	142	5	7	4	36	<u>196</u>	<u>144</u>	5	7	4	36
행정	104	67	5		2	30	현행과 같음					
<u>세무</u>	14	14					<u>16</u>	<u>16</u>				
사회복지	11	5				6	현행과 같음					
전산	3	3										
기계	2	2										
전기	3	3										

기관별 직급별	현행						개정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화공	1	1					현행과 같음					
농업	1	1										
임업	3	3										
수산	1	1										
보건	5	4		1								
의료기술	1			1								
간호	4			4								
환경	5	5										
토목	16	15			1							
건축	11	10			1							
지적	5	5										
행정·별정												
화공·환경	1	1										
축산·수의	1	1										
보건·약무	1			1								
통신기술·전자 통신기술	1	1										
8급 소계	206	136		12	7	51	207	137		12	7	51
행정	98	65		1	3	29	현행과 같음					
<u>세무</u>	21	21					<u>22</u>	<u>22</u>				
사회복지	30	8				22	현행과 같음					
전산	4	4										
기계	2	1			1							
전기	2	2										
화공	2	2										
농업	1	1										
임업	4	3			1							
축산	1	1										
수산	1	1										
보건	9	5		4								
의료기술	2			2								
간호	5			5								
환경	5	4			1							
토목	8	8										
건축	4	3			1							

기관별 직급별	현행						개정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지적	3	3					현행과 같음					
통신기술	1	1										
임업·토목	1	1										
전기·기계	1	1										
통신기술·전자 통신기술	1	1										
9급 소계	90	52		9	1	28						
행정	42	21			1	20						
세무	5	5										
사회복지	10	2				8						
전산	2	2										
전기	1	1										
임업	4	4										
보건	6	2		4								
의료기술	4			4								
식품위생	1			1								
환경	3	3										
토목	5	5										
건축	4	4										
지적	3	3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소계	1	1										
수행비서	1	1										
기능직 계	93	51	8	3	1	30						
6급 소계	3	3										
전기	1	1										
기계	1	1										
조무	1	1										
7급 소계	5	4				1						
기계	1	1										
운전	3	3										
조무(조무)	1					1						
8급 소계	12	10	2									
전기	1	1										
기계	3	2	1									
운전	3	3										
사무보조(필기)	1		1									
조무(조무)	4	4										

기관별 직급별	현행						개정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9급 소계	26	14	5	2		5	현행과 같음					
건축	1	1										
교환	1	1										
운전	9	4	1	1		3						
간호조무	1			1								
사무보조(필기)	2		2									
사무보조(사서)	1	1										
조무(조무)	10	7	1			2						
사무보조(워드)· 조무(조무)	1		1									
10급 소계	47	20	1	1	1	24						
기계	1	1										
운전	18	2		1	1	14						
조무(조무)	20	9	1			10						
조무(지도)	6	6										
사무보조(워드)· 조무(조무)	1	1										
사무보조(필기)· 조무(조무)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대단위 도시개발에 따른 행정분야 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정분야 의 인력을 충원하여 지방세무 행정에 기여

□ 주요내용

- 제2조 관련 [별표] 의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증원에 따른 정원 조정
 -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인력보강 및 1팀 신설
 - 총 “769명” 에서 “773명” 으로 4명 증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451호

2006-7회차 압류 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동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 다 음 -----

가. 공매대상재산(차량)의 표시

나. 입찰신청 및 보증금 입금마감기간 : 2006. 12. 27.~ 2007. 1. 8. 24:00 (13일간)

※ 유의사항

- 입찰등록기간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유찰시 2회차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공고(다음 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다. 입찰 참여마감일시 : 2007년 1월 8일 (월) 24시

라. 개찰결과 매각결정 일시 : 2007년 1월 9일 (화) 14시

(주)오토마트 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 발표

※ 입찰참여 마감후 입찰보증금 입금여부 확인

마.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하며,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기준: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
(단독입찰 가능 단, 국세징수법 제66조 해당자 입찰 제한)

바.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1.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http://automart.co.kr>) 입찰등록시
개인정보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2.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다음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10/100 이상
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입찰보증금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
가자격을 취소함.

연번	공매 차수	채 납 자		채납금액	공매물건	매 각 예정가격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2차	에스.엠.에스	120111-*****	5,395,880	86서2505	15,300,000	등록원부 참조
2	2차	김 범 석	590623-*****	951,740	인천32라9921	1,350,000	등록원부 참조
3	1차	에스엠인더스	120111-*****	13,622,720	인천80리8903	3,000,000	등록원부 참조
4	1차	삼성화학	120111-*****	3,168,050	인천30구6890	1,000,000	등록원부 참조
5	1차	정 경 덕	681107-*****	1,755,160	인천33도4685	5,000,000	등록원부 참조
6	1차	박 규 성	490625-*****	865,970	인천32너5878	6,000,000	등록원부 참조
7	1차	덕양중건설	120111-*****	1,440,720	인천30리1925	1,500,000	등록원부 참조
8	1차	전 미 라	670905-*****	1,142,360	인천32더3674	5,000,000	등록원부 참조
9	1차	김 석	571223-*****	4,796,190	인천30가1837	500,000	등록원부 참조
10	1차	추 교 성	670830-*****	249,370	인천4러7389	200,000	등록원부 참조
11	1차	양 점 옥	660414-*****	224,600	인천31노3679	2,500,000	등록원부 참조
12	1차	강 지 숙	721221-*****	1,368,270	인천35러5517	7,000,000	등록원부 참조
13	1차	연 영 애	600420-*****	188,830	28루1049	3,500,000	등록원부 참조

입금계좌번호 : 한미은행 465-00095-258, 남동구청(본인명의로만 입금)

※ 주의 : 입찰신청후 약 15분정도 지난후에 입금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및 오후10시부터 오전9시까지)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입찰신청후 [입찰참여] 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사.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우리구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아.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처저가격임

자.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사항

- ※ 공매물건의 하자 및 표시착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책임을지지 아니하므로 본인 책임하에 현지확인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 매각 진행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건당 7,500원이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낙찰받은 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매수자 책임하에 이전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체납정리팀 차량공매담당 ☎032-453-2427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12. 2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4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 구월동 1197-4, 만수동878번지상 위법건축물의 건축주(행위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처분(건축법위반 고발 조치)사전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6. 12. 28 ~ 2007. 01. 11까지
2. 공고내용
 -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통지)
3. 기타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정본은 공시송달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붙임]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3.6.30>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건축과-27909

시행일 : 2006. 12. 13.

수신 : 김오동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법위반 고발 통보					
2. 당사자	성명(명칭)	김오동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7-4번지 1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구월동 1197-4번지 101호 3.75㎡ 불법증축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고발조치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80조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	김경태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전화번호	032) 453-2762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032) 453-2769
	제출기한		2007년 1월 15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3.6.30>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건축과-27909

시행일 : 2006. 12. 13.

수신 : 구순해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법위반 고발 통보						
2. 당사자	성명(명칭)	구순해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95번지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만수동 878번지 1층 1.5㎡ 불법증축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고발조치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80조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	김경태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전화번호	032) 453-2762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032) 453-2769	
	제출기한		2007년 1월 15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신문용지 60g/m²)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456호

2007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열람공고

2007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별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결정되어 세부사항에 대한 열람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2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아 래 -

1. 열람내용 : 2007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2. 열람기간 : 2007. 1. 1 ~ 2007. 1. 31까지
3. 열람장소 : 남동구청세무과재산세팀
4. 열람문의 : 032) 453-2401 ~ 2406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457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귀하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2.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호	소재지	주 소
일반음식점	간석4-179	미스터피자	구자동	690105-1*****	간석4동 616-3 (삼성홈플러스간석점지하1층)	불명

3.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4. 청문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제58조
 - 식품위생법 제64조
6.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2)
 - 청문일시 : 2007. 1. 12 (금) 11:00
 - 청문장소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6층) 사무실
 - 청문주재자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7. 기 타 : 청문 불참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2006. 12.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65호

2006년도 예 산 고 시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20일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7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2006년도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	비 고
합 계		204,991,039	194,030,479	10,960,560	5.6	
일반회계		183,457,984	171,650,472	11,807,512	6.9	
특별회계		21,533,055	22,380,007	△846,952	△3.8	
	의료급여기금	389,139	380,896	8,243	2.1	
	주 차 장	5,466,600	6,365,400	△898,800	△14.1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3,337,521	3,293,916	43,605	1.3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6,656,395	6,656,395	0	0	
	만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30	230	0	0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5,683,170	5,683,170	0	0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183,457,984	100	171,650,472	100	11,807,512	6.9
세 입	지방세수입	32,799,459	17.9	31,574,547	18.4	1,224,912	3.9
	세 외 수 입	42,229,187	23.0	40,726,910	23.7	1,502,277	3.7
	경상적세외수입	20,795,891	11.3	19,398,103	11.3	1,397,788	7.2
	임시적세외수입	21,433,296	11.7	21,328,807	12.4	104,489	0.5
	지방교부세	1,762,149	1.0	1,462,149	0.9	300,000	20.5
	조정교부금	42,644,289	23.2	40,633,390	23.7	2,010,899	4.9
	보 조 금	63,022,900	34.4	56,253,476	32.8	6,769,424	12.0
	국고보조금	34,694,209	18.9	30,735,919	17.9	3,958,290	12.9
	시도비보조금	28,328,691	15.4	25,517,557	14.9	2,811,134	11.0
	지 방 채	1,000,000	0.5	1,000,000	0.6	0	0.0
	국내차입금	1,000,000	0.5	1,000,000	0.6	0	0.0
세 출	경 상 예 산	57,801,497	31.5	59,161,229	34.5	△1,359,732	△2.3
	인건비	36,607,993	20.0	37,398,455	21.8	△790,462	△2.1
	경상적경비	21,193,504	11.6	21,762,774	12.7	△569,270	△2.6
	사 업 예 산	115,007,522	62.7	108,481,453	63.2	6,526,069	6.0
	보조사업	81,670,597	44.5	73,631,809	42.9	8,038,788	10.9
	자체사업	33,336,925	18.2	34,849,644	20.3	△1,512,719	△4.3
	채 무 상 환	93,342	0.1	93,342	0.1		0.0
	지방채상환	93,342	0.1	93,342	0.1		0.0
	예 비 비 등	10,555,623	5.8	3,914,448	2.3	6,641,175	169.7
	예비비	8,797,544	4.8	1,711,768	1.0	7,085,776	413.9
	기타	1,758,079	1.0	2,202,680	1.3	△444,601	△20.2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183,457,984	100	171,650,472	100	11,807,512	6.9
성 질 별	인 건 비	38,382,294	20.9	39,131,360	22.8	△749,066	△1.9
	물 건 비	13,833,399	7.5	14,183,841	8.3	△350,442	△2.5
	이전경비	80,251,234	43.7	75,176,007	43.8	5,075,227	6.8
	자본지출	40,372,434	22.0	39,627,816	23.1	744,618	1.9
	융자및출자	0	0.0	0	0.0	0	0.0
	보전재원	90,000	0.0	90,000	0.1	0	0.0
	내부거래	378,866	0.2	378,866	0.2	0	0.0
	예비비및기타	10,149,757	5.5	3,062,582	1.8	7,087,175	231.4
기 능 별	일반행정비	53,399,309	29.1	55,147,621	32.1	△1,748,312	△3.2
	사회개발비	105,681,516	57.6	100,176,417	58.4	5,505,099	5.5
	경제개발비	13,743,344	7.5	12,751,603	7.4	991,741	7.8
	민방위비	390,716	0.2	418,907	0.2	△28,191	△6.7
	지원및기타경비	10,243,099	5.6	3,155,924	1.8	7,087,175	224.6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21,533,055	100	22,380,007	100	△846,952	△3.8
세 입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0
	세 외 수 입	20,962,346	97.3	21,861,541	97.7	△899,195	△4.1
	경상적세외수입	8,762,119	40.7	8,663,414	38.7	98,705	1.1
	임시적세외수입	12,200,227	56.7	13,198,127	59.0	△997,900	△7.6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0
	보 조 금	570,709	2.7	518,466	2.3	52,243	10.1
	국고보조금	168,914	0.8	232,871	1.0	△63,957	△27.5
	시도비보조금	401,795	1.9	285,595	1.3	116,200	40.7
세 출	경 상 예 산	594,710	2.8	688,464	3.1	△93,754	△13.6
	인건비	134,258	0.6	162,612	0.7	0	△17.4
	경상적경비	460,452	2.1	525,852	2.3	△65,400	△12.4
	사 업 예 산	17,127,546	79.5	20,401,185	91.2	△3,273,639	△16.0
	보조사업	697,249	3.2	645,006	2.9	52,243	8.1
	자체사업	16,430,297	76.3	19,756,179	88.3	△3,325,882	△16.8
	채 무 상 환	0	0.0	0	0.0		0.0
	지방채상환	0	0.0	0	0.0		0.0
	예 비 비 등	3,810,799	17.7	1,290,358	5.8	2,520,441	195.3
	예비비	3,690,645	17.1	1,172,404	5.2	2,518,241	214.8
	기타	120,154	0.6	117,954	0.5	2,200	1.9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21,533,055	100.0	22,380,007	100.0	△846,952	△3.8
성 질 별	인 건 비	291,059	1.4	319,413	1.4	△28,354	△8.9
	물 건 비	1,346,761	6.3	1,533,161	6.9	△186,400	△12.2
	이전경비	751,979	3.5	759,936	3.4	△7,957	△1.0
	자본지출	15,332,457	71.2	18,477,139	82.6	△3,144,682	△17.0
	융자및출자	0	0.0	0	0.0	0	0.0
	보전재원	0	0.0	0	0.0	0	0.0
	내부거래	0	0.0	0	0.0	0	0.0
	예비비및기타	3,810,799	17.7	1,290,358	5.8	2,520,441	195.3
기 능 별	일반행정비	0	0.0	0	0.0	0	0.0
	사회개발비	13,251,074	61.5	15,895,231	71.0	△2,644,157	△16.6
	경제개발비	4,471,182	20.8	5,194,418	23.2	△723,236	△13.9
	민방위비	0	0.0	0	0.0	0	0.0
	지원및기타경비	3,810,799	17.7	1,290,358	5.8	2,520,441	195.3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66호

2007년도 예 산 고 시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20일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7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2007년도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2006년 당초예산액	증 감	%	비 고
합 계		207,815,787	183,330,004	24,485,783	13.3	
일반회계		191,831,028	163,209,394	28,621,634	17.5	
특별회계		15,984,759	20,120,610	△4,135,851	△20.6	
	의료급여기금	381,783	341,411	40,372	11.8	
	주 차 장	3,638,000	5,307,064	△1,669,064	△31.4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834,976	4,928,570	△2,093,594	△42.4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7,513,000	6,656,395	856,605	12.8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1,617,000	2,887,170	△1,270,170	△43.9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2006년 당초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191,831,028	100	163,209,394	100	28,621,634	17.5
세 입	지방세수입	33,195,965	17.3	28,644,572	17.6	4,551,393	15.9
	세 외 수 입	37,203,610	19.4	38,274,699	23.5	△1,071,089	△2.8
	경상적세외수입	20,869,930	10.9	19,313,472	11.8	1,556,458	8.1
	임시적세외수입	16,333,680	8.5	18,961,227	11.6	△2,627,547	△13.9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44,625,834	23.3	38,300,000	23.5	6,325,834	16.5
	보 조 금	76,805,619	40.0	56,990,123	34.9	19,815,496	34.8
	국고보조금	44,484,406	23.2	31,706,553	19.4	12,777,853	40.3
	시도비보조금	32,321,213	16.8	25,283,570	15.5	7,037,643	27.8
	지 방 채	0	0.0	1,000,000	0.6	△1,000,000	#####
	국내차입금	0	0.0	1,000,000	0.6	△1,000,000	#####
세 출	경 상 예 산	62,988,870	32.8	56,929,604	34.9	6,059,266	10.6
	인건비	40,544,130	21.1	36,042,854	22.1	4,501,276	12.5
	경상적경비	22,444,740	11.7	20,886,750	12.8	1,557,990	7.5
	사 업 예 산	123,655,902	64.5	102,472,825	62.8	21,183,077	20.8
	보조사업	96,811,276	50.5	74,099,397	45.4	22,711,879	30.7
	자체사업	26,844,626	14.0	28,373,428	17.4	△1,528,802	△5.4
	채 무 상 환	195,000	0.1	93,342	0.1	101,658	108.9
	지방채상환	195,000	0.1	93,342	0.1	101,658	108.9
	예 비 비 등	4,991,256	2.6	3,713,623	2.3	1,277,633	34.4
	예비비	2,543,763	1.3	1,868,757	1.1	675,006	36.1
	기타	2,447,493	1.3	1,844,866	1.1	602,627	32.7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2006년 당초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191,831,028	100	163,209,394	100	28,621,634	17.5
성 질 별	인 건 비	40,544,130	21.1	37,700,520	23.1	2,843,610	7.5
	물 건 비	14,365,303	7.5	13,487,836	8.3	877,467	6.5
	이전경비	96,813,583	50.5	72,433,551	44.4	24,380,032	33.7
	자본지출	35,316,756	18.4	36,249,864	22.2	△933,108	△2.6
	융자및출자	0	0.0	0	0.0	0	0.0
	보전재원	150,000	0.1	90,000	0.1	60,000	66.7
	내부거래	797,493	0.4	378,866	0.2	418,627	110.5
	예비비및기타	3,843,763	1.7	2,868,757	1.7	975,006	34.0
기 능 별	일반행정비	49,283,310	25.7	51,559,225	31.6	△2,275,915	△4.4
	사회개발비	124,503,225	64.9	97,818,745	59.9	26,684,480	27.3
	경제개발비	13,548,046	7.1	10,493,943	6.4	3,054,103	29.1
	민방위비	457,684	0.2	375,382	0.2	82,302	21.9
	지원및기타경비	4,038,763	2.1	2,962,099	1.8	1,076,664	36.3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2006년 당초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15,984,759	100	20,120,610	100	△4,135,851	△20.6
세 입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0
	세 외 수 입	15,354,376	96.1	19,552,159	97.2	△4,197,783	△21.5
	경상적세외수입	5,857,995	36.6	10,105,182	50.2	△4,247,187	△42.0
	임시적세외수입	9,496,381	59.4	9,446,977	47.0	49,404	0.5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0
	보 조 금	630,383	3.9	568,451	2.8	61,932	10.9
	국고보조금	224,379	1.4	232,859	1.2	△8,480	△3.6
	시도비보조금	406,004	2.5	335,592	1.7	70,412	21.0
	경 상 예 산	887,058	5.5	677,464	3.4	209,594	30.9
세 출	인건비	409,442	2.6	162,612	0.8	246,830	151.8
	경상적경비	477,616	3.0	514,852	2.6	△37,236	△7.2
	사 업 예 산	10,023,495	62.7	12,789,698	63.6	△2,766,203	△21.6
	보조사업	921,677	5.8	694,991	3.5	226,686	32.6
	자체사업	9,101,818	56.9	12,094,707	60.1	△2,992,889	△24.7
	채 무 상 환	0	0.0	0	0.0		0.0
	지방채상환	0	0.0	0	0.0		0.0
	예 비 비 등	5,074,206	31.7	6,653,448	33.1	△1,579,242	△23.7
	예비비	4,997,806	31.3	6,623,948	32.9	△1,626,142	△24.5
	기타	76,400	0.5	29,500	0.1	46,900	159.0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2006년 당초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15,984,759	100.0	20,120,610	100.0	△4,135,851	△20.6
성 질 별	인 건 비	409,442	2.6	319,398	1.6	90,044	28.2
	물 건 비	558,602	3.5	1,537,161	7.6	△978,559	△63.7
	이전경비	340,691	2.1	729,936	3.6	△389,245	△53.3
	자본지출	9,601,818	60.1	10,880,667	54.1	△1,278,849	△11.8
	융자및출자	0	0.0	0	0.0		0.0
	보전재원	0	0.0	0	0.0	0	0.0
	내부거래	0	0.0	0	0.0		0.0
	예비비및기타	5,074,206	31.7	6,653,448	33.1	△1,579,242	△23.7
기 능 별	일반행정비	0	0.0	0	0.0	0	0.0
	사회개발비	7,757,699	48.5	8,207,494	40.8	△449,795	△5.5
	경제개발비	3,152,854	19.7	5,259,668	26.1	△2,106,814	△40.1
	민방위비	0	0.0	0	0.0	0	0.0
	지원및기타경비	5,074,206	31.7	6,653,448	33.1	△1,579,242	△23.7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6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 : 소로1-2호선, 사업명 : 만수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63) 및 건설과(☎453-272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2. 2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07-2번지 일원 [변경없음]
2. 변경사유
 - 보상지연 및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1) 종 류 : 도로(소1-2호선)
 - (2) 명 칭 : 만수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 : 폭원(B)=10~13m, 연장(L)=270m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1)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만수6동 1008번지)
6.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06. 9. 1 ~ 2006. 12. 31
 - 변경 : 2006. 9. 1 ~ 2007.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8.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용 지 조 서

공사명: 만수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연 번	소재지		지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동 명	지 번		공 부	편 입	간 여 성	주 소	성 명	주 소		
계				7,539.0	3,147.0	4,392.0					
1	만수동	612-1	도	2.0	2.0	-	이준형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561			
2	"	606-3	도	120.0	120.0	-	유홍순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582			
3	"	611-1	도	221.0	221.0	-	최하현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556			
4	"	606-10	도	20.0	20.0	-	이진성	인천시 중구 신흥동1가 34-8 폴림A 101-510			
5	"	808-14	도	3,587.0	484.0	3,103.0	국(건교부)				
6	"	608-2	도	466.0	466.0	-	오진호	인천시 남구 학익동 719 동아폴림A 116-1302			
7	"	608-1	답	19.0	19.0	-	오진호	인천시 남구 학익동 719 동아폴림A 116-1302			
8	"	607-5	도	119.0	119.0	-	이은분외 8인	인천시 서구 석남동 187-7			
9	"	607-2	도	777.0	777.0	-	윤철상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317-3			
10	"	606-9	도	14.0	14.0	-	인천시 남동구				
11	"	606-1	도	13.0	13.0	-	유홍순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582			
12	"	604-5	도	75.0	75.0	-	전희영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556			
13	"	638-1	도	416.0	416.0	-	국(건교부)				
14	"	603-8	도	631.0	66.0	565.0	김충광외 3인	부산시 남구 대연동 1222-10			
15	"	603-2	도	1,031.0	307.0	724.0	국(건교부)				
16	"	미등록지		28.0	28.0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6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남촌동 소2-19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소로2-19호선, 사업명:남촌동 568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63) 및 건설과(☎453-272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2. 2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당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62-27번지 일원
- 변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68번지 일원

2. 변경사유

-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로(소2-19호선)

(2) 명 칭 :

- 당초 : 남촌동 262번지일원 소방도로 확장공사
- 변경 : 남촌동 568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 소로 2-19호선 : 폭원(B)=8m, 연장(L)=213m중 96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만수6동 1008번지)

6.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05. 5. ~ 2005. 12. 31
- 변경 : 2005. 5. ~ 2007.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8.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용 지 조 서

남촌동 56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관	계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간여	성명	성명	주	소	
1	남촌동	567	임	358	358		25 17 316	김민선	연수구 연수동 532 경남APT 101-907		
2		568-6	진	94	94		13 81	이강신	남촌동 565		
3		568-15	대	11	11		11	공유식	연수구 동촌동 924-3 삼성APT 2-1301		
4		568-16	대	50	50		4 46	김우조	남촌동 566-7	연수구 옥련동 334-1	근저당
5		568-17	대	85	85		28 57	최춘석	남촌동 566		
6		568-18	대	181	181		85 96	이정례	남촌동 566-3	기술산업보증기금	가압류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		
								(주)경기은행	남촌동 1127	남촌동 1127	가압류
								남촌동	남촌동 민수동 1014-1	남촌동 민수동 1014-1	근저당, 지상권
								김학순	남촌동 1557-5	남촌동 1557-5	근저당
								윤무진	경기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376	경기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376	근저당
계				779	779		142 229 408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69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3-28(2003.6.26)호로 사업시행인가된 안남·동암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완료되었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3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2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안남·동암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남동구 구월동 6-3외 1 / 3,859.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사업시행자
성 명	안남·동암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엄재홍 석우종합건설(주) 대 표 이항덕
주 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6-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프라자 504호

4. 준공인가 내역

구 분	인가내역	비 고
대지면적	3,859.2㎡	
건축면적	891.91㎡	
연 면 적	12,130.31㎡	
건 폐 율	23.11%	
용 적 륜	241.06%	
주차대수	102대	
세 대 수	91세대(임대주택 포함)	임대주택 5세대

5. 건축시설

공동주택(아파트) 1개동 / 지하1층 / 지상13층 / 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70호

2007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I. 2007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정건물에 대한 가산율)
- ⑤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200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15,966종, 0.42% 인하)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나. 기계장비(7,737종, 0.16% 인상)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다. 선박(135종, 1.36% 인상)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139종, 동결)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1,162종, 0.45%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295종, 1.60%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사. 입목(36종, 동결)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123종 11.49%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자. 광업권(158종0.61%인상)

①용어정의 ②대상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차.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1,314종 9.77%인상)

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